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조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황영호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관광·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국가보훈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및 충청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, 현행 휴양림 지역 상품권페이백 사업의 환급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사용 용어를 개정 및 추가 정의함.(안 제3조)

- “국가보훈대상자”, “아너소사이어티 회원”, “충청권 시·도민”

나.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규정(안 제12조 및 별표2)

다. 이용객에 대한 지역상품권 환급 기준을 조정함(안 제21조)

- 지역상품권페이백사업 축소 : (현행) 50% → (조정) 30%

5. 검토내용

○ 본 개정안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

「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6조에 따른 기부자(아너소사이어티 회원)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반영한 것으로,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자와 지역사회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기여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이해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.

- 또한, 충청권 4개 시·도 간에 체결한 「충청권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서(2024.10.14.)」으로, 감면 대상 범위를 기존 충청도민에서 충청권 4개(충북·충남·대전·세종) 시·도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- 지역상품권페이백 비율 조정(50% → 30%)은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필요 조치로써, 충청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장차적으로는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임.

구 분	2024년	2025년	비 고
예산액	101,750천원	81,400천원	△20,350천원
숙박료	48천원	48천원	4인실 기준
환급률	50%	30%	△20%
환급액	24천원	15천원	△9천원
수혜자	4,240명	5,427명	28%↑ (1,187명) 공공숙박시설(81개소) 최근3년 이용 증가율 고려
결 과	2024년 대비 예산 20,350천원 감액 되었지만, 조례 개정으로 수혜자는 1,187명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며, 환급률 축소(30%)에도 연중 예산범위에 따라 적정히 추진 가능함.		
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고, 조례안 예고('25. 3. 6.~3. 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부자의 예우를 강화하고, 충청권 4개 시·도 간 상생협력 강화 차원의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를 명확히 규정하는 타당한 조치임.
- 지역상품권페이백 비율 조정의 경우 예산운영 측면 등에 있어 필요하나, 향후 이용객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정히 충족하기 위해시계열적 조사와 충청도 관광 활성화에 관한 변화 추이를 계속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, 지역상품권페이백 비율 조정은 집행부와 담당부서가 앞으로도 계속 검토 관리하여 적정성 유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